
Policy and Law Report _Vol.10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9.27 ~ 10.4) -

October 5,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및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뉘, ①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②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③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④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함	2021-09-29										
	<table><tr><th>분과</th><th>주요의제(안)</th></tr><tr><td>1분과</td><td>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① 클라우드·데이터·AI 활용으로 산업 효율화 및 혁신서비스 창출과 미래 유망 플랫폼 육성 전략 ② 초거대 AI 기술 투자 등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인프라 경쟁력 강화 방안 ③ 다양한 규모·영역의 플랫폼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④ 전통산업과의 이해충돌, 전문직역과의 갈등 등 해소 </td></tr><tr><td>2분과</td><td>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②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 상황 및 규제 추진 현황 분석 및 비교 ③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대형, 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로도입 관련 역차별 검토 </td></tr><tr><td>3분과</td><td>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① 플랫폼 기업의 공공목적 기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이용자의 탐색비용 절감 ③ 플랫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td></tr><tr><td>4분과</td><td>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 활용·보호 조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② 알고리즘 편향성 해소,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 역기능 방지 ③ 플랫폼 이용에 대한 기업간/개인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td></tr></table>		분과	주요의제(안)	1분과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① 클라우드·데이터·AI 활용으로 산업 효율화 및 혁신서비스 창출과 미래 유망 플랫폼 육성 전략 ② 초거대 AI 기술 투자 등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인프라 경쟁력 강화 방안 ③ 다양한 규모·영역의 플랫폼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④ 전통산업과의 이해충돌, 전문직역과의 갈등 등 해소	2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②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 상황 및 규제 추진 현황 분석 및 비교 ③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대형, 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로도입 관련 역차별 검토	3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① 플랫폼 기업의 공공목적 기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이용자의 탐색비용 절감 ③ 플랫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4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 활용·보호 조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② 알고리즘 편향성 해소,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 역기능 방지 ③ 플랫폼 이용에 대한 기업간/개인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분과		주요의제(안)									
	1분과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① 클라우드·데이터·AI 활용으로 산업 효율화 및 혁신서비스 창출과 미래 유망 플랫폼 육성 전략 ② 초거대 AI 기술 투자 등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인프라 경쟁력 강화 방안 ③ 다양한 규모·영역의 플랫폼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④ 전통산업과의 이해충돌, 전문직역과의 갈등 등 해소									
	2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상황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 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②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 상황 및 규제 추진 현황 분석 및 비교 ③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대형, 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로도입 관련 역차별 검토									
3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① 플랫폼 기업의 공공목적 기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②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개척 및 이용자의 탐색비용 절감 ③ 플랫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4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 활용·보호 조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② 알고리즘 편향성 해소,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 역기능 방지 ③ 플랫폼 이용에 대한 기업간/개인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에서 식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함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됨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② 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③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④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임	2021-09-29
금융 위원회	•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timely)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 계속 지원 ②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시작 ③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중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 정상화 ④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2021-09-2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u>「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0.2 시행)</u>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7984호,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 이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10-01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보건 복지부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최근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개정, 2022.1.21.시행)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 의견제시기간 : 9/28(화)~11/1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로 제출	2021- 10-01
국토 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7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 한도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문적 · 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 · 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정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상 강화 (안 제10조) -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삭제하여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 ② 전문적 · 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 ·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 ※ 의견제시기간 : 9/28(화)~11/11(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2021- 09-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1.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을 추가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안 제28조의4)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안 제29조) ③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안 제42조제4항) ④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안 제95조)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9/30(목)~11/9(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로 제출	2021-09-3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정의 마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선 (안 제15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2021-09-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③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④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안 제35조의2 신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 (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 (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⑦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021-09-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⑧ 과징금 규정 정비 (안 제64조의2 신설) -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1인)</u>」 현행법상 명예훼손, 사기 등의 불법 정보로는 볼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교묘히 피해를 주는 “거짓 · 과장 · 기만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정보유통 구조를 악용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 · 과장 · 기만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특히,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허위 리뷰 또는 별점 테러 등이 작성되어도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정책적 사유 등으로 허위리뷰에 대한 삭제 · 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며, 현행 방송법상 거짓 · 과장 · 기만 광고에 대해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실시간 휘발성을 활용해 이용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 · 과장 · 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 · 기만 · 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 · 과장 · 기만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 신설 및 제76조)	2021-09-2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 위주의 동영상, 앱마켓,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등 시장 독점 구조가 공고화된 가운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사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요금 또한 지나치게 인상되는 등의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수차례 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대응에 그치면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그 범위와 방식도 확대되면서 이용자 피해 또한 커짐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온라인 시장 독점과 지배력 전이 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ICT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 조직·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CT 시장의 지속가능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7조의2 신설 등)	2021-09-29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기사와 광고를 분리하여 편집하도록만 규정하고, 광고 표시 등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2020년 ‘기사형 광고’ 심의에 의하면, 온라인 신문의 경우 박스형 배너 광고가 기사 페이지 하단에 ‘기사 더 보기’라고 배치되어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게 하거나 “글(또는 취재) ○○기자”를 넣어 오인 유도 하는 등 총 6,852건 중 위반 결정이 6,806건에 달했음. 2018년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기사형 광고가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2021-09-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u>」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러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2021-09-27
보건복지 위원회	• 「<u>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u>」 의료기술 및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인이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분야 원격모니터링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 대면진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환자에 대한 상시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의료행위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의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으로 비대면진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격의료 범위 확대,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 (안 제34조제1항) –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2021-09-3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再診患者)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② 원격의료 사고 책임소재 명확화 (안 제34조제3항) -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의료 사고 원인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함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4 신설)	2021-09-2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 관련 법의 일몰 시한 도래로 인한 적용기간 3년 연장

주요 내용	종료 일자	제안 일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	2021년 12월 31일	2021-09-2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2021년 12월 31일	2021-09-29
창업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	2021년 12월 31일	2021-09-30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2021년 12월 31일	2021-10-0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 각 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은 링크된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참고 요망 [링크]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0/8(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8호 발간	
국회도서관	10/5(화)	현안입법 알리기 -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10/6(수)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글로벌 오픈엑세스와 국회도서관의 서비스 -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ZOOM
	10/8(금) 11:30	제17차 「밥 대신 지식강좌」 실시 - 도서관 민주주의	
예산정책처	10/6(수)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발간 -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현황, 추진실태, 성과 등을 점검·분석 - 향후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 제시	
입법조사처	10/5(화)	「NARS 현안분석」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 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10/8(금)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과 북일관계	화상회의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농해수위	10/5(화) 10:00	전체회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출석일자 변경의 건 / 법안 의결
	10/7(목)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0/5(화) 13:00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민형배, 신영대, 이동주, 양의원영 의원실 외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10/6(수) 10:00	경기도 재산비례 벌금·범칙금 도입 국회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의원실, 경기도 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27(월) 10:00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토론회	오기형, 민병덕, 이용우, 이정문 의원실	오기형TV 유튜브
9/27(월) 10:00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이탄희,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의원실 외	ZOOM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